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1

(2015. 5. 14)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28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월)

4.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을 경감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894호 구세 감면 적용 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100분의 75로,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축소(안 제2조)
- 나.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삭제(안 제8조)
- 다. 구세 감면조례인 제18조 (감면자료의 제출) 및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용조항 제99조=>제184조, 제96조=>제180조로 변경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안 조례 제894호 부칙 제3조)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을 재산세 100%를 2014년~2016년까지는 재산세 75%로, 2017년~2018년까지는 재산세 50%로, 그 동안 적용해 왔던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용조항을 제99조를 제184조로, 제96조를 제180조로 각각 변경하며,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894호에 따르면 구세 감면 적용 시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을 “감면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는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 중 “제3조제1호의 단서”를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0분”을 “1천분”으로 한다.

안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후단 중 “제99조”를 “제184조”로 한다.로 하고,

안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후단 중 “제96조”를 “제180조”로 하였으며,

부칙 조례 제894호(2010.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3조 중 “2015년”을 “2017년”으로 한다.로 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9.~4.8.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2014년도 마포구 구세 감면 현황을 보면 총 90건/ 8,668만 4천원으로 이는 2014년도 마포구 구세 부과액 845억 4,557만 8천원의 0.103%에 해당하고, 2014년도 마포구 예산 4,322억 6,479만 8천원의 0.020%에 해당되며 또한 부칙에서 정한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간과 동일하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정하도록 한 동(同) 조례안은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그 밖에 정비되지 않은 부정확한 용어 및 문구 등을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관 계 법 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기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9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애영장업: 애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애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애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 2014년도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

(단위: 천원)

조 문	내 용	세 목	2014년 감면 현황		비 고
			건수	금액(천원)	
	합 계		90	86,684	
	세 목 소 계	재 산 세	6	86,661	
	세 목 소 계	등록면허세	84	23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	-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	2	6,420	
제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2	2,682	
제8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2	77,559	
제10조 1호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	-	
제10조 2호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	-	
제11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	-	
제12조 1항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	-	
제12조 2항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	-	
제13조 1항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	-	-	
제13조 2항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	-	-	
제14조 1호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재산세	-	-	
제14조 2호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재산세	-	-	
제14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록면허세	84	23	

○ 2014년도 마포구 구세 부과액 : 84,545,578천원

○ 2014년도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한 부과액 대비 감면율 : 0.103%

$$\Rightarrow 86,684천원 / 84,545,578천원 = 0.103\%$$

○ 2014년도 마포구 예산 : 432,264,798천원

■ 재산세 감면 현황(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 시)

세 목	감면내용	감 면 율			비 고
		2014년	2015~2016년	2017년~	
재산세	종교단체 의료업	100%	75%	50%	2014년도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대상(마포구 해당없음)
	관광호텔용 부동산	25~50%	폐지		

-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율 : 2014년도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대상(마포구 해당없음)
-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율 : 2014년도 => 2건/77,559천원(마포구 25% 감면대상)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사유 :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수도권인 경우 30% 이상이면서 외국인한테 받는 숙박료가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외는 10% 인하해서 받을 때 감면대상이 됨

마포구 구세 감면조례 제8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퍼센트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퍼센트

- 관광호텔용 부동산 감면율은 2014년도 25~50%를 감면할 수 있고, 2015년도부터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전환됨.